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1. 11.

제안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연대의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코자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촉대상을 변경하고 소위원회 운영 명시 (안 제7조)
- 위원의 임기 및 관리 조항 추가 (안 제10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정보 지속 관리 및 정보제공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시책”을 “정책”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에 따른 구미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지역연대는”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항 중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하고,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로, 제3항 중 “위원은”을 “운영위원회 위원은”으로, “기관 및”을 “참여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 지원시설
 5. 가족지원 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연구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 사안별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 ⑥ 소위원회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 및 서비스제공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구축 사항
4. 위기관리 및 예방지원, 공동대응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중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사무”를 “직무”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의 제목 “(간사)”를 “(위원의 임기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역연대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연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연대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u>시책</u> 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u>정책</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아동·여성폭력”이란 <u>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u>	2. ----- <u>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u>
제3조 (생 략)	제3조 (원안과 같음)
제4조 (생 략)	제4조 (원안과 같음)
<u><신 설></u>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u>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 1. <u>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u>

제5조 (생 략)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 아동·여성 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에 따른 구미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 (원안 제5조와 같음)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

--.

② -----부위원장-----
-----호선하고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

참여기관 및-----

-----.

1. 구미시의회의 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

1. 구미시의회의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 지원시설
5. 가족지원 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연구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 사안별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⑥ 소위원회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
-----.

1.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등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9조(회의) ①②생략

3. 아동·여성 보호 및 서비스제공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구축 사항

4. 위기관리 및 예방지원, 공동대응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
-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관리)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삭제

제11조(회의) ①②(원안 제9조와 같음)

<u><신 설></u>	<u>③ 시장은 지역연대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u> <u>·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u> <u>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u> <u>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u> <u>노력하여야 한다.</u>
<u>제11조~제14조 (생 략)</u>	<u>제13조~제16조 (원안 제11조부터 제14조와 같음)</u>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의회,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에 따른 구미시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 아동·여성 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 지원시설

5. 가족지원 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연구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 사안별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⑥ 소위원회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 및 서비스제공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구축 사항
4. 위기관리 및 예방지원, 공동대응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관리)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지역연대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연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구미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연대로 본다.